제 22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회사 정관 제 22 조에 의하여 제 22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※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%이하 소액주주에 대한 소 집통지는 상법 제 542 조의 4 와 정관 제 22 조에 의거하여 전자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
- 아 래 -

1. 일시 : 2019 년 03 월 22 일(금) 오전 9시

2. 장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8 길 15 (신사동) A&GEM 빌딩 5F

3. 회의목적사항

1) 보고사항

가. 감사보고

나. 영업보고

다.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
2) 부의안건

제 1 호 의안: 제 22 기(2018.01.01~2018.12.31)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

계산서 포함)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 2 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
제 2-1 호 의안 : 사내이사 한현옥 선임의 건 제 2-2 호 의안 : 사내이사 윤성훈 선임의 건

후보자 성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추천인	회사와의 거래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
한현옥	1960.04.14	現 (주)클리오 대표이사前 현대리서치 연구원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및 동 대학원	이사회	요	최대주주 본인
윤성훈	1966.11.24	- 現 (주)클리오 경영전략본부장 - 前 코텍 COO/CFO 이사회 없음 없 - 부산대학교 회계학과		없음	

제 3 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

제 3-1 호 의안 : 상근감사 류근형 선임의 건

후보자 성명	생년월일	주요약력	추천인	회사와의 거래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
류근형	1958.09.09	- 現 (주)클리오 감사 - 前 한국외환은행 지점장 - 연세대학교 사회학과	이사회	92 미0	없음

제 4 호 의안 :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

제 5 호 의안 :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

제 6 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4.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

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당사의 금번 주주총회부터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5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

당사는 「상법」 제 368 조의 4 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 160 조 제 5 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
1)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

가. 인터넷 주소: 「http://evote.ksd.or.kr」

나. 모바일 주소: 「http://evote.ksd.or.kr/m」

- 2) 전자투표 행사/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 2019년 3월 12일 ~ 2019년 3월 21일
 -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
- 3)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 -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: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,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/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
- 4)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
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신분증

-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
2019년 3월 6일

주식회사 클리오

대표이사 한 현 옥(직인생략)

문의전화 : 본사 전략기획팀 070-4628-5005

정관 일부 변경案

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				
	2			
제 8 조(주권의 종류)	<u>제 8 조 <삭제></u>	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		
회사의 주권은 1주권, 5주권,		삭제(전자증권법 § 25 ①)		
10 주권, 50 주권, 100 주권,				
500 주권, 1,000 주권 및				
10,000 주권의 8 종류로 한다.	-i) 0 코 6ì 0	사자비이이 거의 저지즈기비		
<u>(신설)</u>	제 8 조의 2 (조시도이 권기도로)	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		
	(주식등의 전자등록)	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		
	회사는 주식・사채 등의 전자	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		
	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	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		
	1 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			
	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			
	전자등득세와구에 구걱등들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			
제 14 조(명의개서대리인)	제 14 조(명의개서대리인)	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		
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	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	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		
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	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	T 7 1 T 1 C 0 U 0 C 0		
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, 주식	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, <u>주식</u>			
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	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			
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	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			
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	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			
접수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	취급케 한다.			
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				
금 취급케 한다.				
제 15 조(주주 등의 주소, 성명	제 15 조 <삭제>	주식 등이 전자등록에 따른		
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		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		
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		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		
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		삭제		
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				
고하여야 한다.				
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				
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				
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				
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				
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정한				
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				
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				

제 16 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제 16 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표준 정관 반영 기준일) 기준일)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 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 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이사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이사 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 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 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 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 함께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주 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기준일의 2 주간 전에 이를 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 공고하여야 한다. 여야 한다. 제 19 조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제 19 조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제 15 조의 삭제에 따른 문구 규정) 규정) 정비 제 14 조 및 제 15 조의 규정 제 14 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 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 다.

제 20 조(소집시기)

집한다.

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

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, 임 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 표준 정관 반영

제 20 조(소집시기)

한다.

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

도 종료후 3월 이내에, 임시

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

(신설)	제 37 조의 2(이사의 책임감경)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 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 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 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는 3 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 여 면제한다. 다만, 이사가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	이사 등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담이 경영인의 적극적인 기 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 로 작용함에 따라, 상법에서 는 정관으로 정함에 따라 이 사의 책임감경을 가능하게 하 는 바, 당사 또한 정관으로 정하고자 함
	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조, 제 397조의 2 및 제 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제 47 조(감사의 직무 등)	제 47 조(감사의 직무 등)	제 37 조의 2 신설 항목에 따
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 36 조	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 36 조	른 준용 규정 추가
제 3 항을 준용한다.	제 3 항 및 <u>제 37 조의 2 의</u> 규	
	정을 준용한다.	
제 52 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	제 52 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	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
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	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	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
있어서는 <u>주식회사의 외부감사</u>	에 있어서는 <u>주식회사 등의</u>	관한 법률 제 10 조에 따라 외
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	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	부감사인 선정권한의 개정 내
감사인선임위원회(또는 감사위	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	용 반영
<u>원회)</u> 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	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	
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	인을 선정하여야 하고,회사는	
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	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	
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	한 <u>이후에</u> 소집되는 정기주주	
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	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	
다.	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	
(신설)	부칙	정기주주총회일(3.22)과 전자
	이 정관은 2019년 3월 22	증권법 시행일(9월경) 차이에
	일(정기주주총회일)부터 시행	따른 단서 문구 추가
	한다. 다만, 제 8 조, 제 8 조의	
	2, 제 14 조, 제 15 조 및 제	
	19 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ㆍ	
	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	
	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	
	부터 시행한다.	

위 임 장

대리인

성 명:

주민등록번호:

본인은 2019년 3월 22일에 개최하는 (주)클리오의 제 2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위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결권 행사를 위임합니다.

- 다음 -

1. 주주번호 :

2. 소유주식수 : 주

3. 의결권있는주식수: 주

4. 위임할 주식수 : 주

5.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

번 호	주주총회 목적사항			반 대
제 1 호	제 22 기(2018.01.01~2018.12.31)재무제표(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)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			
제 2 호	이사 선임의 건	제 2-1 호 : 사내이사 한현옥 선임의 건		
세스모	의자 건립의 건 -	제 2-2호 : 사내이사 윤성훈 선임의 건		
제 3 호	감사 선임의 건	제 3-1 호 : 상근감사 류근형 선임의 건		
제 4 호	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			
제 5 호	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			
제 6 호	정관 일부 변경의 건			

[※] 각 의안에 대해 위의 찬성란 또는 반대란 중 한 곳에만 O 또는 √로 표시함

6.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ㆍ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

-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 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-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.

항 목	지 시 내 용

주주명: (인)

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:

위임일자 및 위임시간: 년 월 일 시

주식회사 클리오 귀중